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따라 (주) 한미약품(이하 "당사")의 협력업체 (이하 "협력사")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당사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서류 및 실사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한다.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5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1.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별표1. 협력업체 선정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내외 제조회 또는 수입유통업체 중 제약품질 기준에 맞는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 ②. 당사가 정한 협력업체 기준(제조시설/거래실적/품질/납기일/가격)에 적합한 제조사 또는 수입유통업체
 - ③. 사전 Audit 및 설문조사 시, 심의 적합한 업체
 - ④. GMP Audit 결과 적합한 업체

제7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사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거래등록 취소(중단)를 할 수 있다
 -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가이드라이 미준수에 따른 제제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협력업체 선정 절차(Work Flow)

